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은림 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제503호  
다. 발의일자: 2023. 2. 6.  
라. 회부일자: 2023. 2. 9.

### 2. 제 안 사 유

-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유사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을 기본이념에 추가함(안 제2조).  
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를 정의함(안 제3조).  
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설치기준 마련을 규정함(안 제18조).  
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태양광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에너지전환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제315회 정례회(22.12.) 시 「태양광 조례」 폐지조례안과 「에너지전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한 유사 조례의 일원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조례안으로 상정된 각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심사보류)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조례」 내용 중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등에 관한 규정과 「에너지전환 조례」 내용 중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발의된 것임.

- 안 제2조는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에 있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본이념에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을 추가하고, 안 제3조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며, 안 제24조와 제25조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과 포상 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 안 제18조는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거나 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필수적인 과제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임.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동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

제18조(설치기준의 마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설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해당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 안 제29조는 기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책 추진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또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에 베란다·주택형·건물형 태양광 설비와 같이 특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

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확대를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발굴 및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